

미래를 바꾸는 힘! **고양**

차 례

입 법 예 고

고양시 공고 제2026-1347호	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측량대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	1
고양시 공고 제2026-1351호	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	10
고양시 공고 제2026-1352호	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	18

공 고

고양시 공고 제2026-1379호	일산전통시장 인정구역 변경 공고	26
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

고양시 공고 제2026 - 1347호

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

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「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26일

고 양 시 장

1. 자치법규명: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
측량대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2. 개정 이유:

- 「상업등기법」 제15조 및 「상업등기규칙」 제26조에 따라 ‘법인 등기부등본’이 ‘법인등기사항증명서’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고, 인용 법령의 개정 사항에 맞춰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- 불명확한 ‘측량대행자의 결격사유’ 조항을 보완하고, 측량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‘법인등기부등본’을 ‘법인등기사항증명서’로 변경함(안 제3조제1호).
- 나. 「건설업체진단규정」의 폐지 및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」의 개정 사항에 맞춰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함(안 제5조).

- 다. 측량대행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(안 제8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).
- 라. 측량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(안 제12조).

4. 자치법규안: 별첨

5.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
6. 의견제출

- 가. 제출기일: 2026년 6월 15일까지
- 나. 제출방법: 서면, 우편, 인터넷 등
- 다. 기재내용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- 라. 제출기관: 고양시장(도시개발과)
 - 주 소: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20(고양시청 백석별관 6층)
 - 전 화: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(031-8075-3163)
 - 팩 스: 031-8075-4933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
측량대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- 성명(단체명):
- 주 소:
- 전 화 번 호:

규칙안 내용	의견	비고

고양시 규칙 제 호

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측량대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측량대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」 제25조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」 제25조에 따라”로, “측량대행자(이하 “대행업자”라 한다)”를 “측량대행자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행업자”를 “측량대행자(이하 “대행업자”라 한다)”로, “사항과”를 “각 호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시장”을 “고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법인등기부등본”을 “법인등기사항증명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임대하고”를 “사무실을 임차하고”로, “임대계약서”를 “임대차계약서”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대행업자 자격심사)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그 자격을 심사한 후 대행업자를 지정한다. 다만,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」 제23조를 준용할 수 있다.

제7조 중 “제5조 규정에 의한”을 “시장은 제5조에 따른”으로, “대행업자 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을”을 “별지 제2호서식의 대행업자 지정서를”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.

1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
2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에 해당하는 자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행업자가”를 “시장은 대행업자가”로, “1”을 “어느 하나”로, “정지시킨다”를 “정지시킬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9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징수할”을 “징수하는”으로, “수수료는”을 “측량수수료는”으로, “지적측량 수수료”를 “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”로, “의하며”를 “따르며”로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규제의 재검토)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도시개발과
입 안 자	부 서 장 성 명	도시개발과장 이 양 금
	팀 장 성 명	도시개발팀장 김 수 남
	담 당 자 성명 · 연락처	서 은 영 (031-8075-3163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」 제25조 규정에 의한 측량대행자(이하 “대행업자”라 한다)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」 제25조에 따라 측량대행자 ----- -----.
제2조(측량의 구분) <u>대행업자</u> 가 실시할 측량은 다음 <u>사항과</u> 같다.	제2조(측량의 구분) <u>측량대행자</u> (이하 “대행업자”라 한다)----- ----- <u>각 호와</u> -----.
1. ~ 2. (생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<u>기타 시장이</u> 의뢰하는 일반 측량	3. <u>그 밖에 고양시장</u> 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-----
제3조(대행업자 지정신청) (생략)	제3조(대행업자 지정신청) (현행과 같음)
1. <u>법인등기부등본</u> 및 정관(자연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)	1. <u>법인등기사항증명서</u> ----- -----
2. ~ 4.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대행업자사무소 시설 및 설비 내용과 소유증명서</u> (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대계약서)	5. ----- -----(<u>사무실을 임대차하고</u> ----- <u>임대차계약서</u>)
제5조(대행업자 자격심사) 제3조에 의한 <u>대행업자 지정신청이</u> 있을 때에는 별표 1 및 「건설업체진단규정」 제27조의 규정을 준용	제5조(대행업자 자격심사) <u>시장은</u> 제3조에 따른 <u>대행업자 지정신청이</u> 있을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그 자격을 심사한 후 <u>대행업자를 지</u>

현행	개정안
<u>하여 그 자격을 심사한 후 대행업자를 지정한다.</u> 제7조(지정서 교부) 제5조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<u>대행업자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</u>을 교부한다. 제8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.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, 이에 준하는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.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제9조(지정 취소 및 대행정지) <u>대행업자가</u>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 업무를 <u>정지시킨다.</u> 1.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	<u>정한다. 다만,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」 제23조를 준용할 수 있다.</u> 제7조(지정서 교부) <u>시장</u>은 제5조에 따른 ----- ----- <u>별지 제2호서식의 대행업자 지정서를</u> ----. 제8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. 1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2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에 해당하는 자 제9조(지정 취소 및 대행정지) <u>시장</u>은 <u>대행업자가</u> ----- <u>어느 하나</u>----- ----- <u>정지시킬 수 있다.</u> <u><삭 제></u>

현행	개정안
<u>발생하였을 때</u> 2. ~ 8. (생략) 9. <u>기타</u> 측량대행에 대한 계약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(측량수수료) 대행업자가 <u>징수할 수수료는 지적측량 수수료에 의하며</u> 한정분할은 그 수수료의 배액으로 한다. <u><신설></u>	2. ~ 8. (현행과 같음) 9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- 제12조(측량수수료) ----- <u>징수하는 측량수수료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에 따르며</u> ----- ----- <u>제13조(규제의 재검토)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</u>

고양시 공고 제2026 - 1351호

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

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「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26일

고 양 시 장

1. 자치법규명: 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2. 제정(개정·폐지) 이유:

-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)에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누락됐거나 문언을 달리하는 조항을 개정
 - 제안서평가위원회의 다른 시·도 위원 구성 비율(구성인원의 20% 이상)을 추가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함.
 - 평균점수 산출기준을 세밀화(소수점 다섯째 자리까지)하여 동점자 발생을 방지함.
- 제안서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구성하도록 한 예비 평가위원 비율을 구성인원의 50%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의(開議) 요건(7명 이상 출석)이 안정적으로 충족되도록 함.

- 예비 평가위원을 입찰참여자가 추천하도록 하여 평가위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제안서평가위원회의 다른 시·도 위원 구성 비율을 20퍼센트 이상으로 함(안 제3조제3항).
- 나. 제안평가위원회의 예비 평가위원 비율을 50퍼센트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입찰참여자가 추천하도록 함(안 제3조제4항).
- 다. 제안서평가점수 산출 결과, 평균점수 소수점자리를 다섯째 자리로 변경함(안 제6조제2항).
- 라.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.

4. 자치법규안: 별첨

5.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
6. 의견제출

- 가. 제출기일: 2026년 6월 15일까지
- 나. 제출방법: 서면, 우편, 인터넷 등
- 다. 기재내용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라. 제출기관: 고양시장(회계과)
 - 주 소: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(주교동, 고양시청)
 - 전 화: 회계과 계약1팀 031-8075-2510
 - 팩 스: 031-8075-4909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☐ 자치법규명: 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
일부개정규칙안
-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규칙안 내용	의견	비고

고양시 규칙 제 호

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제2호 중 “정부투자기관·출연기관·지방공기업”을 “정부투자기관·출연기관·지방공기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해당분야”를 “해당 분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소지한”을 “가진”으로 한다.

제3조제3항 후단 중 “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이 있을”을 “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·도(주된 근무지 기준)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하며, 빈도수가 동일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20퍼센트”를 “50퍼센트”로, “지정할”을 “추첨하게 할”으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아니하도록”을 “않도록”으로, “확인하여야”를 “확인해야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셋째자리에서”를 “다섯째 자리에서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평가위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한 것으로 본다.

소 관 부 서		회 계 과
입 안 자	부 서 장 성 명	회 계 과 장 이 학 천
	팀 장 성 명	계 약 1 팀 장 방 진 규
	담 당 자 성명 · 연락처	방 진 규 (031-8075-2510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평가위원의 위촉) ①·② (생략) ③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고양시장 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 한다. 1. (생략) 2. <u>정부투자기관·출연기관·지방 공기업</u> 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3.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 람 중 <u>해당분야</u> 전공을 한 사 람 4.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 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<u>소지한</u> 사람 5.·6. (생략) ④·⑤ (생략)	제2조(평가위원의 위촉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정부투자기관·출연기관·지 방공기업</u> ----- ----- ----- 3. ----- --- <u>해당 분야</u> ----- -- 4. ----- ----- <u>가진</u> - -- 5.·6. (현행과 같음) 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생 략)	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현 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②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, 산출 결과 최종(평균)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<u>셋째자리</u> 에서 반올림한다.	같은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다섯째 자리에서 -----.

고양시 공고 제2026 - 1352호

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

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「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26일

고 양 시 장

1. 자치법규명: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2. 제정(개정·폐지) 이유:

- 「상업등기법」 제15조 및 「상업등기규칙」 제26조에 따라 ‘법인 등기부등본’이 ‘법인등기사항증명서’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고, 중복된 조문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‘법인등기부등본’을 ‘법인등기사항증명서’로 변경함(안 제2조제4호 및 제7호).
- 나.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과 관련한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함(안 제6조제4항).
- 다. 상위법령 용어에 맞춰 ‘임금지불서약서’를 ‘근로계약’으로 변경함

(안 제9조제1항제1호).

라.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.

4. 자치법규안: 별첨

5.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
6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: 2026년 6월 15일까지

나. 제출방법: 서면, 우편, 인터넷 등

다. 기재내용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
라. 제출기관: 고양시장(회계과)

- 주 소: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(주교동, 고양시청)

- 전 화: 회계과 계약1팀 031-8075-2514

- 팩 스: 031-8075-4909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: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
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성명(단체명):
- 주 소:
-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

고양시 조례 제 호

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 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법인등기부등본”을 “법인등기사항증명서”로, “사업자등록증에”를 “사업자등록증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법인등기부등본”을 “법인등기사항증명서”로, “환경부”를 “기후에너지환경부”로, “특허청”을 “지식재산처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고양시”를 “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제7조 중 “계약체결시 [별지 제1호서식] 에 의한”을 “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 [별지 제2호서식] 의 건설노동자 임금 및 별지 제3호서식] 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”를 “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노동자 임금 지급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

확서”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중 “(표준계약서 작성 등)”을 “(계약서 작성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“임금지불서약서”를 “근로계약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표준계약”을 “계약”으로 한다.

제17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회계과
입 안 자	부 서 장 성 명	회계과장 이 학 천
	팀 장 성 명	계약1팀장 방 진 규
	담 당 자 성명 · 연락처	황 지 은 (031-8075-2514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용어의 뜻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용어의 뜻)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“지역건설업자”란 법인인 경우 <u>법인등기부등본</u> , 개인인 경우에는 <u>사업자 등록증</u> 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고양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.	4. ----- -- <u>법인등기사항증명서</u> ----- ---- <u>사업자등록증</u> 의----- ----- -----.
5.·6. (생략)	5.·6. (현행과 같음)
7. “신기술 및 특허 등”이란 <u>법인등기부등본</u> 또는 <u>사업자등록증</u> 에 영업소재지를 고양시에 두고 있는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, <u>환경부</u> , <u>특허청</u>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인 인증된 신기술, 특허 등을 획득한 원천건설기술을 말한다.	7. ----- <u>법</u> <u>인등기사항증명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후에너지환경부</u> ----- <u>지식재산</u> <u>청</u> ----- -----.
제6조(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) ① (생략)	제6조(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신기술 및 특허 등이 필요한 건설공사의 경우 <u>고양시</u>	② ----- ----- <u>시</u> -----

현행	개정안
관내업체가 보유한 신기술 및 특허 등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적극 권장한다. ③ (생략) ④ 제3조제2항제1호의 <u>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대상사업의 경우 시 관내에 거주하는 고양 시민이 최대한 고용되도록 한다.</u> 제7조(임금지불서약서) 사업주는 관급공사 <u>계약체결시[별지 제1호서식]</u>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제8조(임금 및 임대료 지급계획서 확인) ① 수급인은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<u>[별지 제2호서식]의 건설노동자 임금 및 별지 제3호서식]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(이하 “지급계획서”라 한다)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</u> ②·③ (생략) 제9조(<u>표준계약서 작성 등</u>) 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	-----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제7조(임금지불서약서) ----- ----- <u>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</u> ----- -----. 제8조(임금 및 임대료 지급계획서 확인) ① ----- ----- ----- <u>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노동자 임금 지급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</u>----- 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9조(<u>계약서 작성 등</u>) ①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. 1. 건설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<u>임금 지불서약서</u> 2.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<u>표준계약</u> ② (생략) <u>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	----- -----. 1. ----- <u>근로 계약</u> 2. ----- <u>계약</u> ②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
고양시 공고 제2026-1379호

일산전통시장 인정구역 변경 공고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구역 변경 신청을 수리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2026년 5월 26일

고 양 시 장

□ 전통시장 구역 변경 내역

번호	시장명	소재지	내용	변경내역		지정일
				당초	변경	
제2026-1호	일산전통시장	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12번길 9 일원	인정구역 확대	6,492㎡	7,420㎡	'26. 5. 22.